



연합회 소식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올 한해 EU,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4회 실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 공동으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카르텔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제의 생존경쟁 속에서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을 사전 예방 함으로써 국격(國格)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국제카르텔 예방 교육은, 2010년 한 해 동안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기업이 미국과 EU 경쟁당국으로부터 주요 감시대상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카르텔 제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카르텔 예방 교육은 우리 기업의 공정경쟁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카르텔 예방 교육은 EU와 미국은 각 1회 및 중국 2회 등 총 4회에 걸쳐, 해외 한국 현지법인의 임직원이나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카르텔 예방 교육은 또한, 경쟁법의 주요 내용, 집행 현황, 사례 분석, 사건 처리절차, 경쟁법 위반 시의 제재,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등 해외 경쟁법의 규제 내용과 우리 기업의 공정경쟁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을 담당하게 될 주요 강사진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쟁당국 간부와 카르텔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현지 변호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 직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국제카르텔 예방 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본 연합회 홈페이지 및 경쟁저널 등을 통해 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KFCF 일반

■ KFCF 2010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안내 정기이사회 2월 10일, 정기총회 2월 24일 각각 개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2010년도 정기이사회를 2월 10일 롯데호텔 칼顿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비롯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달 24일 대한상공회의원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2010년도 이사회 의결 안건에 대한 인준과 더불어 회원사와 함께 올해 본 연합회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경쟁정책국장을 초빙해 2010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 기업결합과 박제현 사무관의 강의를 통해 최근 자국의 반독점법을 적극 적용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결합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정기이사회	정기회원총회
일 시	2010년 2월 10일 (수) 오전 11시	2010년 2월 24일 (수) 오후 2시
장 소	롯데호텔 36층 칼顿룸	대한상공회의원회(서울시 중구 소재)
참석대상	본 연합회 이사	본 연합회 회원

■ KFCF 신규 전화번호 안내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보다 원활한 사내 전화망 구축과 유선전화 응대의 효율을 높이고자 사내 유선통신망(전화회선)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사내 유선통신망 교체를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업무 담당자별 직통번호가 부여되어 과거보다 원활한 상담업무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신규 대표전화번호는 02-310-3300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표전화번호인 02-775-8870~1은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변경된 대표번호로 착신이 전환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은 없으실 것입니다. 대표팩스번호 역시 기존과 동일한 02-775-8873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대연합회 업무에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전화번호(각 업무 담당자별 전화번호)는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kfcf.or.kr → e네트워크 → 공지사항 223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소식

교육 · 연수

■ 2010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교육 · 연수 프로그램(안)

* 상기 교육일정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정명	일정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변호사연수 (2회/년)	• 3월 8일 • 12월 6일 (1일 8시간)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의무연수 • 공정거래법 (시지, 기업결합, 카르텔, 과징금 등) • 심·판결 사례분석 • 법조인 윤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대규모소매업종 관련 공정거래교육 (4회/년)	• 3월 16일 • 4월 28일 • 9월 1일 • 11월 9일 (1일 3시간)	대형유통업체, 오픈마켓, 인터넷대형서점 등의 영입 행위에 수반되는 • 대규모소매업고시 등 주요 내용 • 대규모소매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하도급 관련 내용	인터넷쇼핑몰, 대형서점,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 대규모소매업 관련 업체 임 직원
하도급법 특별교육 (인센티브 부여) (2회/년)	• 3월 25일 • 9월 17일 (각 1일 3.5시간)	• 하도급법 및 시행령 · 하도급공정화지침 등 하도급 관련 제 도 주요 내용 • 하도급 벌점 감점 교육 – 대표참여시 : 1점, 임원급 참여시 : 0.5점	제조, 건설, 용역, 서비스, 운송 등 하도급 관련 대표 자 및 임직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시 등) 공정거래교육 (5회/년)	• 2월 22일 • 4월 22일 • 6월 11일 • 8월 27일 • 12월 10일 (각 1일 4시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규정 및 제도 •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 결 및 공시제도 • DART 이용에 대한 실무 질의 · 응답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계열사 담당자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 행위공정거래교육 (2회/년)	• 4월 29일 • 10월 5일 (각 1일 4시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 부당 내부거래 ·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계열사 담당자
지주회사제도 관련 공정거래교육 (1회/년)	• 2월 9일 (각 1일 3시간)	• 지주회사 제도 관련 공정거래 제도 및 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 및 규정 등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계열사 그룹 담당자
종합연수(I) 기초 · 이론 (2회/년)	• 4월 15~16일 • 9월 9~10일 (각 2일/비합숙)	공정거래 관련 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심화 • 법 · 체계 및 기초 배경지식과 이론 • 대표적 심결사례 해설 및 질의 · 응답 등	기업체 공정거래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제약업종 관련 공정거래교육 (2회/년)	• 5월 18일 • 12월 2일 (1일 3시간)	시장감시업종인 제약업종의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하여 반기별 CP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 제약업종의 공정거래법상 실무가이드라인과 제약업의 공정 거래 정책방향 • CP 운영 및 등급평가제도 • 제약업종 관련 공정거래 심결 · 사례 분석	제약업종 CP 도입사 및 미 도입사 공정거래 담당자, 자율준수관리자 및 임직원
종합연수(II) 심결 · 사례분석 (2회/년)	• 5월 13~14일 • 10월 21~22일 (각 2일/비합숙)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부당지원,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 대표 심결사례 분석 · 모범 사례 분석 • 고법, 대법 판결문 분석 및 질의 · 응답 등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 래담당 책임자, 전문연수 증급과정 수료자, 변호사 등
종합연수(III) 심결 · 사례분석 (1회/년)	• 11월 18~19일 (각 2일/비합숙)	표시 · 광고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의 • 주요 심결사례 분석 • 고법, 대법 판결문 분석 및 질의 · 응답 등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 래담당 책임자, 종합연수 초급과정 수료자, 변호사 등

과정명	일정	교육 내용	교육 대상
하도급 특화 공정거래교육 (2회/년)	• 6월 2일 • 11월 24일 (1일 3시간)	• 하도급법 및 시행령 · 하도급공정화지침 등 하도급 관련 제도 주요 내용과 심결사례 분석	제조, 건설, 용역, 서비스, 운송 등 하도급 관련 대표자 및 임직원, 실무자, 신입 등
표시·광고 특화 공정거래교육 (1회/년)	• 7월 7일 (1일 3시간)	•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 표시광고공정화지침 등 표시·광고 관련 제도 주요 내용과 심결사례 분석	유통, 건설, 제조, 광고대행사 등 관련 담당 임직원
불공정행위 특화 공정거래교육 (1회/년)	• 6월 23일 (1일 3시간)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관련 법·제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과 심결사례 분석	기업체 공정거래 담당 및 영업, 구매 등 임직원
가맹업종 관련 공정거래교육 (1회/년)	• 5월 28일 (1일 3시간)	가맹업종(프랜차이즈)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 가맹업종의 공정거래법상 실무가이드라인과 가맹업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 가맹사업자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CP 운영 및 등급평가제도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상 담사, 프랜차이즈업자 외 가맹업종 CP 도입사 및 미도입사 공정거래담당자, 자율준수관리자 및 임직원
특수거래분야 관련 공정거래교육 (2회/년)	• 5월 25일 • 10월 15일 (1일 3시간)	특수거래에 해당하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할부거래, 다단계판매 등 업종에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 특수거래업종의 공정거래법상 실무가이드라인과 특수거래업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 방문판매 · 할부거래 법 시행령 등 • CP 운영 및 등급평가제도	방문판매, 할부거래, 전화권 유판매, 다단계판매등 관련 업종 CP 도입사 및 미도입사 공정거래 담당자, 자율준수 관리자 및 임직원
전자상거래업종 관련 공정거래교육 (1회/년)	• 7월 1일 (1일 3시간)	전자상거래업종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 전자상거래업종의 공정거래법상 실무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업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 전자상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자 관련 공정거래법 등 • CP 운영 및 등급평가제도	전자상거래업체 CP 도입사 및 미도입사 공정거래 담당자, 자율준수관리자 및 임직원
공정거래법과 시장경제분석과정 (1회/년)	• 6월 17일 (1일/종일)	공정거래법의 기초가 되는 시장분석 및 시장경제분석에 대해 공정위 시장분석 담당자와 교수, 변호사 등에게 배우는 • 시장분석이 쟁점이 된 주요 심결사례 분석 • 시장분석 스킬, 시장분석 관련 이론 등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 래담당 책임자, 전문연수 중급과정 수료자, 변호사 등
맞춤교육	• 수시	• 업체별 특성(요청)에 맞는 맞춤형 특화교육 • 해당 분야·업종·직급별 니즈에 맞춘 공정거래교육과정	공정거래 관련 부서 임직원 전체
준법 교육	• 매달 셋째주 또는 넷째주 - 화요일 (공) - 수요일 (하) - 목요일 (표) - 금요일 (가) (1일 3시간)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각 위반 법규의 주요 내용 등 - 공정위 기타의 시정조치 중 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해당 임직원



연합회 소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P 컨설팅 관련

- 11월 : 세방전지 CP 매뉴얼 리모델링
- 12월 : 캐리어 CP 매뉴얼 컨설팅 / 서희건설 CP 매뉴얼 컨설팅 / 농협하나로마트 CP 매뉴얼 컨설팅
/ 삼성코닝정밀유리 CP매뉴얼 리모델링

■ 2009년도 CP 등급평가 종료

2009년도 제4회 CP 등급평가가 지난 11월 27일 종료됐습니다.

CP를 도입한 기업 중 54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해, 지난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CP 등급평가 관련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2009년 제4회 CP 등급평가

평 가 대 상	54개 업체
평 가 시 기	2009년 6월 25일 ~ 11월 27일 최종보고 11월 27일 / 12월 30일 평가결과 개별 통보
평 가 결 과	AA 6개, A 21개, BBB 21개, BB 3개, B 3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등급평가에 대한 결과와 등급 현황을 알려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분쟁조정

■ 2009년 하도급분쟁조정 333건 처리…하도급대금 156억 377만여원 구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2009년 분쟁조정 결과 발표

지난 2009년 하도급 분쟁조정 건수가 2008년과 비교해 12.6% 증가했지만, 조정금액은 72%나 큰 폭으로 증가해 15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한영섭)는 지난해 총 353건의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요청 받아 이 중 333건을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지금 받은 조정금액은 총 156억 377만 4,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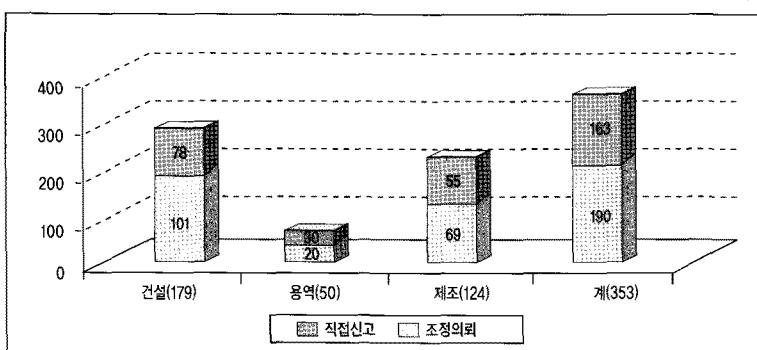
지난해 본 연합회 하도급분쟁협의회로 신청된 분쟁조정 건은 총 353건으로, 당사자의 직접적인 신고로 접수된 건이 163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 되어 조정의뢰 된 건이 190건이었다.

[표 1]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

(단위 : 건수)

2009년	건 설	제 조	용 역	계
직접신고	78	55	30	163
조정의뢰	101	69	20	190
계	179	124	50	353

(단위 : 건수)





연합회 소식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신청건수는 각각 315건과 353건으로 12.6%가 증가했다.

신청된 분쟁조정 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부문의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179건으로 2008년도와 비교해 16.9%가 증가했다.

그러나 용역 부문은 50건(75%)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제조업 부문은 124건(-0.7%)으로 소폭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또한, 2008년에 이월된 56건과 2009년 접수된 353건 등 총 409건 중 333건을 처리해 81.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처리된 건은 조정성립(합의) 건 160건, 조정불성립 건 125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조정불개시된 건 48건 등이었다.

건수 기준 조정 성립률은 56.1%이었으며, 조정신청 금액기준으로는 77%의 성립률을 보였다.

[표 2] 2009년 하도급 분쟁조정 조정성립 현황

(단위 : 건수)

2009년	조정성립	불성립	불개시	계
건설	79	63	18	160
제조	60	54	22	136
용역	21	8	8	37
계	160	125	48	333

특히, 지난해 하도급 분쟁조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156억 377만 4,000원으로 조정신청금액의 증가율은 8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2008년, 2009년 분쟁조정금액 비교

(단위 : 금액)

구 분	조정신청금액	조정금액	신청대비 조정률
2009년	20,257,336천원	15,603,774천원	77%
2008년	10,825,817천원	9,062,358천원	83%
증감률 (2008년 대비)	87%	72%	

접수·처리된 분쟁조정사건에서 하도급법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201건, 부당감액 49건, 설계 변경·추가공사·물가 변동 미적용 41건, 부당한 발주 취소 및 부당반품 26건, 선급금·여음 할인료·지연이자·관세 환급금 등의 미지급 19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부당한 대물변제 등이 6 건의 순이었다.

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58.7%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분쟁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부당감액 14.3%, 설계 변경·추가공사·물가 변동 미적용 11.9%의 순이었다.

[표 4] 2009년 분쟁조정금액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 분석

법 위 반 유 형	2009	2008	구성비(2009년)
하도급대금 미지급	201	213	58.7%
부당감액	49	34	14.3%
설계 변경, 추가공사, 물가 변동 미적용	41	20	11.9%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반품	26	13	7.6%
선급금, 여음할인료, 지연이자, 관세 환급금 등의 미지급	19	8	5.5%
기타(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대물변제)	6	10	1.7%

[표 5] 2008년, 2009년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 비교

(단위 : 건수)

접수현황	2008년	2009년	증가율
건설	153	179	16.9%
용역	28	50	78.5%
제조	134	124	-0.07%
계	315	353	12.6%